

◆ 政府 施策 ◆

經濟제도관행 國際化 적극추진 — 企劃院, 국제화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보고 —

정부는 投資 및 企業環境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방침아래 각종 行政規制改革, 사회 간접자본 투자확대등을 통해 경제제도 및 관행의 國際化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기업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工場建設 · 資金調達 · 勞使制度등을 중점 개선, 기업육을 고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통상마찰의 완화를 위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등 세계경제질서에 적극 참여하고 美 · 日 · 中等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經濟協力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도로 · 항만 · 철도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충해 사회간접자본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규제완화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규제완화시책에 대한 사후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國內 · 外 기업인을 똑같이 대우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추진중인 자유화계획의 범위내에서 각국의 요구에 대응하고 경쟁력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 상대국이 관세를 인하하도록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韓 · 美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經濟協力對話機構(DEC)’를 통해 양국간 교역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산업 · 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日本과는 경제윤리를 바탕으로 시장개방과 엔高현상을 적극 활용해 양국간 교역이 확대 · 균형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中國과는 산업구조상의 보완관계 차원에서 航空協定등 당면 현안사안을 조속히 해결해 우리기업의 진출에 따른 애로를 타개키로 했다.

資本自由化 단계적 확대

— 財務部, 資本협력확대추진대책 보고 —

정부는 우리경제의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대응해 資本自由化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외 資本協力을 강화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 촉진 ▲기업의 外貨借入 확대 ▲해외투자 활성화 및 ▲對개도국 資本協力 강화등을 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계류등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 對日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적용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고유업 종진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 지금은 병역특례보충역을 배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자기업에대한 부동산취득 전면허용, 세부담 완화(초과유보소득세 : 25%~15%), 투자신고절차 간소화(10일 이내), 외국인 專用工團건설 및 투자개방 예시제에 의한 자유화업종 확대 등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고도기술등을 제외한 기술도입시에 주무부 신고제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설비투자촉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低利 외화자금 조달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外貨貸出 공급액을 늘리고 대출조건도 개선키로 했다. 또 기업의 海外證券 발행한도를 금년 20억달러 규모에서 내년에는 25억달러로 늘리고 對日 延支給수입기간을 수출용에 한해 현재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한편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輸出선수금 영수한도도 연간 수출실적의 2~5%에서 3~7%로 늘릴 계획이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30개인 해외투자 제한업종중 탄소섬유제조·섬유제품·대규모유자망·일반도소매·점토벽돌 등 13개 업종을 자유화키로 했다.

또 해외부동산 투자를 보험사 자산운용 목적에까지 확대하고 내년도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 지원액을 2천억원으로 배증시키고 倉庫業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새로 실시해 업계의 해외유통망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開途國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설비 수출증대등을 도모키 위해 내년에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을 1400억원 증액하고 延拂輸出金融 지원액은 33억 1천만달러로 금년 26억달러 보다 크게 늘릴 예정이다.

수출관련行政 · 外換規制등 완화

— 4차 新經濟추진회의 … 輸出活性化대책보고 —

정부는 선박 및 산업설비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장기 연불수출금융 규모를 내년에 7억달러 더 증액하고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도 올해 3조 6천억원에서 내년에는 5조 8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자금조달과 관련, 일정기준 이상의 신용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수출신용장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허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무역업 등록 면제범위 확대, 수출자율규제품목의 단계적인 축소등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수출부대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하에서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연불수출금융 규모 확대, 수출보험계약체결 한도 확대등 수출지원책과 함께 상역, 금융, 외환, 관세 및 물류, 노동등 전분야를 망라할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자유로운 수출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상역분야에서는 무역업 등록없이도 수출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건당 1만달러 이하에서 2만달러 이하로 확대, 무역업 등록대상이 총 수출승인 건수의 64.2%까지 확대되도록 했다.

또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수출자율규제 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 오는 95년까지 114개 품목에 대한 수출 추천제를 폐지기로 했으며 산업설비의 국제입찰 참가시 석유·가스 생산설비 과당경쟁 소지가 없는 품목은 승인대상에서 제외기로 했다.

외환부문에서는 일본등 행해일수 10일 이하 지역의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수입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까지 허용하고 수출선수금의 영수한도도 대기업은 2%에서 3%로, 중견기업은 5%에서 7%로 각각 확대기로 했다.

또 시설재 도입 및 해외투자 자금등에 국한되고 있는 해외증권 발행용도를 해외광고비 해외디자인개발비등 사후관리가 가능한 특정 해외시장개척용 자금까지 허용해주며 비금융회사의 해외 판매금융 자회사 설립도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금융부문에서는 수출신용장이나 선수출 계약서(D/A, D/P)에 한해서만 가능하던 무역어음 할인·인수가 수출계약서로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종합상사의 해외시장 개척 및 중소기업지원용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시 우대해 주기로 했다.

관세·물류 분야에서는 현재 건당 10만달러 이하와 전년도 환급실적 5천만원 이하인 간이징액 환급제도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 건당제한은 폐지하고 전년도 환급실적 1억 이하의 업체까지 적용대상을 넓혔다.

또 수출 철강재에 대한 국적선 이용 의무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전면 폐지하며 수출상품의 통관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제조전 수출신고를 허용하고 보세장치장 입고의무도 폐지키로 했다.

노동분야에서는 중국 교포인력에 한해 척당 3명까지 허용하고 있는 원양어선 외국인 승선허용범위를 중국 및 동남아 인력과 하급선원의 2분의 1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른 노조찬조비 지원도 폐지되도록 노사합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섬유·신발·완구등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최근 수출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 직업훈련 의무비용을 최대한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평균 4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기간동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시간제근무, 근로자파견제등 근로유형의 다양화에 부응한 노동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출상품의 품질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품 품질실태조사 실시, 품목별 품질향상계획을 마련하고 품질경영을 범산업적 품질혁신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내기업이 외국의 기술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외국유명규격 획득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 자체 기술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개척기금을 현행 100억원에서 내년에는 200억원으로 증액하고 이 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와 고유상표제품의 해외공동판매장, AS망 설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고유상표 및 디자인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98년까지 9700개 품목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4900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또 내년중 무역협회의 무역연수원을 확대개편, 주력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국무역홍보센터를 설립, 수출상품 및 국가이미지 제고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